

#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경선 의원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1284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2월 5일

발 의 자 : 이경선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재형, 신정호, 김종무, 김제리,  
김화숙, 강동길, 노식래, 문장길,  
고병국, 임종국 의원(10명)

## 1. 제안이유

2021년 제3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행사 추진의 효율적·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개의 요건, 소위원회 신설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문을 개정하고,

서울시의 전반적인 민간전문가 운영사항을 규정한 「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도 불구하고,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특성을 반영하여 관련 민간전문가가 위촉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서울시장에 재량을 주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운영위원회의 개의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변경함  
(안 제10조제6항)
- 나.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 운영근거를 신설함  
(안 제10조의2 신설)

다. 민간전문가 위촉방법, 업무범위, 대가지급 등 민간전문가 위촉 및 운영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(안 제11조의2제4항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해당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1호(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6항 중 “매 회의마다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그 구성원 과반수”를 “재적위원 과반수”로 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소위원회의 운영)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고,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1조의2제4항 중 “업무범위는 시장이”를 “위촉방법, 업무범위 및 대가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운영위원회의 구성 등)</p> <p>① ~ ⑤ (생 략)</p> <p>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<u>매 회의마다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</u>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⑦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0조(운영위원회의 구성 등)</p> <p>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 <u>재적위원 과반수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10조의2(소위원회의 운영)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고,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.</u></p> <p><u>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.</u></p>
<p>제11조의2(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·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) ① ~ ③ (생 략)</p>	<p>제11조의2(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·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④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<u>시장이</u> 정한다.</p>	<p>④ -----  <u>위촉방법, 업무범위 및 대가지급</u>  <u>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</u>  <u>따로</u> -----.</p>



○ 분과위원회 운영비 =  $\sum_{i=1}^5$ (연간 분과위원회 운영비용) $i$

$i$  = 비용추계 연차(2021년~2025년)

-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≍ 7,500천원

≍ 150천원 × 5명 × 10회

▶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」 제2조(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) 기준

※ 위원회 참석수당 : 기본 100천원(2시간 이내), 초과 50천원

- 연간 위원회 운영 제경비 ≍ 1,500천원

≍ 30천원 × 5명 × 10회

#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예산정책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남승우

사업평가팀장      이정수

예산분석관      한기백

☎ 02-2180-7952

e-mail : hophan@seoul.go.kr